

# 예 산 총 칙

#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3,382,824	12,401,485
일반회계	386,144,305	11,584,329
특별회계	27,238,519	817,156
공기업특별회계	13,399,195	401,976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399,195	401,976
기타특별회계	13,839,324	415,1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1,918	15,05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64,541	34,9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19,865	36,596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226,340	6,7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26,660	321,8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32,29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